



제417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간산업체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70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 검토의견	2
------------------	---

※ 참고자료

1.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별표]	5
2. 병역지정업체 선정 현황	7
3. 산업기능요원 등 관련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동진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4. 7. 18.
3. 회 부 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하지만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첨단산업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를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인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6조의2(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편입·전직에 대한 특례 등) ① 병무청장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를 포함한다)를 지정해야 하며, 해당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그 사람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해당 병역지정업체로의 전문연구요원 전직을 허용할 수 있다.</u> <u>②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를 지정하여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정원</u>

현행	개정안
	<u>을 배정해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전직 및 자격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¹⁾ 분야 기간산업체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원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으로 전직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계속해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현재의 법령 체계(참고자료3 참조)에서도 국가첨단전략 분야에 해당하는 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며, 다수의 반도체 업체, 바이오 업체 등이 이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다는 점²⁾과,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참고자료1> 참고

2) 반도체 업종 : 38개 업체, 바이오(의료·의약) 업종 : 20개 업체, 디스플레이 업종 : 3개 업체, 이차전지 : 6개 업체(2023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준)

반도체 등 중점정책육성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배정하고 있고, 배정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³⁾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개정안은 병역지정업체에 대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위하여 대기업 인원 배정을 제한하였던 과거 제도 개선⁴⁾ 취지를 고려하여 대기업의 병역지정업체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병력자원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배정 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축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07

3) 중점정책육성분야 별도 배정인원 : ('23년) 180명 → ('24년) 200명 → ('25년) 300명

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1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기간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업·에너지산업·광업·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업체

(공업분야) 1997년부터 대기업 제외 / (광업·에너지업·건설업) 2001년부터 대기업 제외

5) 2019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에서 병역자원 감소를 고려하여 병역특례 배정인원 감축

(산업기능요원: 4,000명 → 3,200명 / 전문연구요원: 2,500명 → 2,200명)

※ 참고자료

1.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별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 관련)

① 반도체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첨단 메모리반도체 산업 : 16나노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 : 픽셀 0.8 μ m 이하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14nm 이하급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디자인서비스·SW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3	첨단 패키징 산업 : FO-WLP, FO-PLP, FO-PoP, SiP 등의 방식으로 반도체 패키지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4	연관산업(자동차, 통신, 사물인터넷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반도체 산업 : 실리콘·화합물 기반의 전력반도체(Discrete, Power IC, Module 등), 이동수단용 반도체(MCU, ECU, Smart Sensor 등)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디자인서비스·SW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② 이차전지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 에너지밀도가 280Wh/kg 이상인 파우치형 배터리, 252Wh/kg 이상인 각형 배터리, 28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이하의 원통형 배터리, 26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초과하는 원통형 배터리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고용량 양극재 산업 : 니켈함량이 80%를 초과하는 양극재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3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 : 600mAh/g 이상 초고성능 전극(실리콘그래파이트 복합음극, 황 양극, 리튬금속 음극) 또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전고체전지, 리튬황전지, 리튬금속전지)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4	배터리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 : 배터리 광물의 채련·정련, 사용후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및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BaaS) 등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고용량 양극재 산업,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과 연계된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③ 디스플레이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산업 : AMOLED 패널(3,000ppi 이상의 초소형, 500ppi 이상의 중소형, FHD 이상의 중대형, 4K 이상의 대형 디스플레이)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친환경 퀀텀닷(QD) 소재 패널 산업 : 반치폭 40nm 이하이고 색재현율 REC2020 기준 90% 이상인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3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산업 : 초대형 칩크기 30 μ m 이하, 모바일 칩크기 20 μ m 이하, 초소형 칩크기 5 μ m 이하의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4	나노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산업 : 크기 1 μ m 이하 나노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5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하여 투명 디스플레이, XR용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는 산업

④ 바이오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바이오의약품 산업 : 세포 배양·정제 기술이 적용된 항체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 :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이 적용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병역지정업체 선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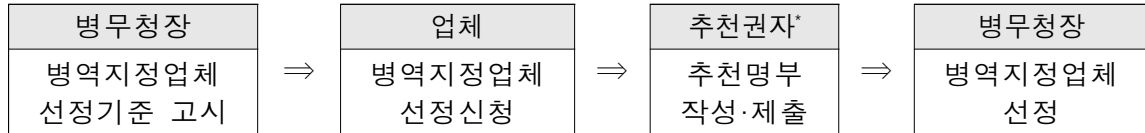
(단위 : 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 요원
계	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방위산업	
6,378	6,262	4	4	17	3	3	82	1,938

3. 산업기능요원 관련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공장을 가진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등
- **제외기준** :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공개된 고액·상습체납 업체, 근로자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후 5년 이내인 업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등

• 선정절차



* 추천권자는 업종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예) 공업분야 : 중기부장관 등, 해운·수산분야 : 해수부장관, 건설분야 : 국토부장관)

■ 전문연구요원 관련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등
- **제외기준** :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공개된 고액·상습체납 업체의 연구기관, 근로자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후 5년 이내인 연구기관 등

• 선정절차

